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28031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 [공2010하, 1895]

판 시 사 항

[1]사채 (社債)의 상환청구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 기간 (=10년)및 사채의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소멸 시효기간(=5년)

[2]첫 경매개시 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한 경우 그 채권신고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및 경매 신청이 취하되면 위 채권신고로 인한 소멸 시효 중 단의 효력 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3]첫 경매개시 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한 경우 그 채권신고에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최고’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및 그 경매신청 취하후 6월내에 위 채권자가 재판상 청구를 하면 민법제170조제2항에 의하여 소멸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여부 (소극)

판 결 요 지

[1]금전채무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그 소멸시효기간은 원본채권의 그것과 같다.한편,상법 제487조 제1항에

“사채의 상환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같은 조 제3항에 “사채의 이자와 전조 제2항의 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미 발생한 이자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그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사채의 상환청구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사채의 상환청구권과 마찬가지로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 사채의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사채의 이자와 마찬가지로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저당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신청을 할 수 있을뿐더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데, 이러한 채권자가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를 법원에 신고하여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그 채권신고는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신고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민법 제175조에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민사집행법 제93조 제1항에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이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신고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도 소멸한다.

[3]저당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신고에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직접적으로 표명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채무자에 대한 통지 절차도 구비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로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최고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고, 경매신청이 취하된 후 6월 내에 위와 같은 채권신고를 한 채권자가 소제기 등의 재판상의 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170조 제2항에 의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할 수 없다.

참 조 조 문

[1]상법 제487조 제1항, 제3항

[2]민법 제168조 제2호, 제175조, 민사집행법 제84조 제4항, 제93조 제1항, 제148조 제4호, 제268조

[3]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2항, 제174조, 민사집행법 제84조 제4항, 제93조 제1항, 제148조 제4호, 제268조

참 조 판 례

[1] 대법원 1996.9.20. 선고 96다25302 판결(공1996하,3145), 대법원 2003.11.14. 선고 2001다61869 판결(공2003하,2327), 대법원 2006.4.14. 선고 2006다3813 판결, 대법원 2008.3.14. 선고 2006다2940 판결(공2008상,580)

[2] 대법원 2002.2.26. 선고 2000다25484 판결(공2002상,781), 대법원 2009.3.26. 선고 2008다89880 판결(공2009상,570)

따 릇 판 례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228778 판결 ,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1다76105 판결

전 문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경◇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훈 외 1인)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국○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화@ 담당변호사 임△순 외 3인)

주 문

원심판결의 판시 제62242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원심판결 제1사채 부분을 파기하고,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금전채무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그 소멸시효기간은 원본채권의 그것과 같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4.14. 선고 2006다3813 판결, 대법원 2008.3.14. 선고 2006다2940 판결 참조).한편,상법 제487조 제1항에 “사채의 상환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같은 조 제3항에 “사채의 이자와 전조 제2항의 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이미 발생한 이자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그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6.9.20. 선고 96다25302 판결, 대법원 2003.11.14. 선고 2001다61869 판결 참조),사채의 상환 청구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사채의 상환청구권과

마찬가지로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사채의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사채의 이자와 마찬가지로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판시 제1사채의 원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기간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상법 제64조에 의해 5년이라고 보고 판시 제1사채의 지연손해금 전부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2.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보증채무가 주채무에 부종한다 할지라도 원래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된 채무이므로 보증채무와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그 채무의 성질에 따라 각별로 정해진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판시 제2사채와 판시 제3사채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는 상행위로 인한 보증채무이므로 상법 제64조에 의해 그 소멸시효기간이 5년이라고 판단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저당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신청을 할 수 있을뿐더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바,이러한 채권자가 채권의 유무,그 원인 및 액수를 법원에 신고하여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그 채권신고는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신고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2.26. 선고 2000다25484 판결, 대법원 2009.3.26. 선고 2008다89880 판결 참조).그러나 민법 제175조에 “압류,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민사집행법 제93조 제1항에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이 첫 경매개시 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신고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도 소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이러한 채권신고에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직접적으로 표명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채무자에 대한 통지 절차도 구비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최고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경매신청이 취하된 후 6월 내에 위와 같은 채권신고를 한 채권자가 소제기 등의 재판상의 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170조 제2항에 의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평건설에 대하여 진행된 서울지방법원 2002타경20606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소멸시효기간 경과 전인 2003.1.16.자로 피고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행위만으로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비추어 잘못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서울지방법원 2002타경20606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 2007.12.28. 취하되어 2008.1.2.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말소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로써 채권신고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그 채권신고에 최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가 위 취하시점으로부터 6월 내에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할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은 그 결론에 있어서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시 제1사채 총당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판시 제62242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원심판결 제1사채 부분을 파기하고,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